2024년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9차] 최종합격자 공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공 개경쟁채용(9차)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궁능유적본부장

□ 최종합격자

th & ㅂ 아	지그	그미에저지	초	종 합격자		
채용분야 	직급	근무예정지	응시번호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매수표원	공무직	선릉	매수표(선릉)30	1478		
시설물관리원	공무직	태릉	시설(태릉)2	2977		
다급	공무직	영휘원	적격자 없음			
안전관리원 (주간)	공무직	태릉	안전(태릉)15	7530		
안전관리원 (야간)	공무직	의릉	야간(의릉)3	6340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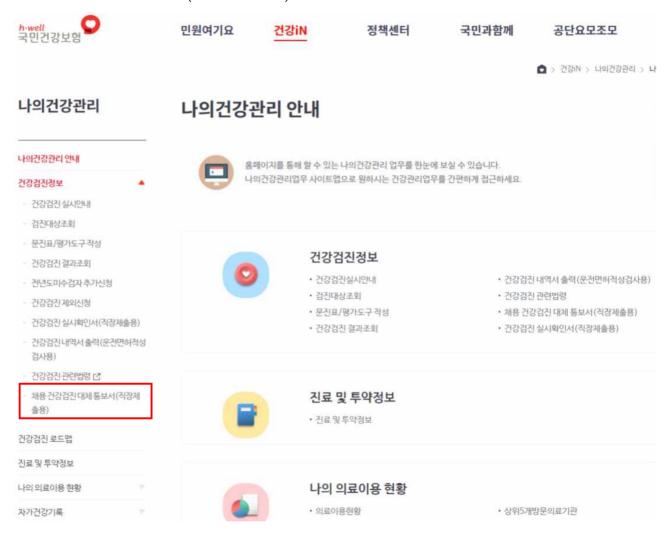
- 1. 최종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2025.1.6.(월) 14:00까지 조선왕릉중부 지구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붙임 1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출력 방법 참조)
 -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붙임 2 서식 작성)
 - 다.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라. 사진(반명함판) 1매 및 통장사본 1부

- 마.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붙임 3 서식 작성)
- 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붙임 4 서식 작성)
- 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붙임 5 서식 작성)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2-972-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출력 방식 1부
 -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1]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출력 방식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 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 채용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u>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u>의합니다.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7	구가유산청	궁능유적본	L부 조선왕등	를 중부지구관리소는	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
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지	합니다.			
П	[피수]기	보 개이정 1	# 수진 · 이	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 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 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 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 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 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	이 개인정」	코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设古
	0 1 1	~ Ц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 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0 L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전자우편주소	관리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ㅁ 토시취	ㅁ 토시리키	ለኔ ዕ
□ 동의함	□ 동의하지	끊금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김	l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ł.								

□ [선택]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지문정보	공무직 등 근로자 근태 관리	개인정보 동의일부터 퇴직일
시판경도	(지문인식기 등록)	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다른 수단 (비밀번호 등록)을 이용하여 근태 관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u>공</u> 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u>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u>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u>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 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u>부패행위</u>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 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해당 🗌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비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비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비해당 🗌

20년월일생년월일. . . 지원자(서명)

년 월 일